

# Working Poor 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적 함의

*A Survey and Policy Implication for the Housing Conditions of the Working Poor*



김태완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근로빈곤가구의 주거와 관련한 평균부채규모는 2,206만원으로 비빈곤 근로가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빈곤 미만의 근로빈곤가구의 RIR(20%)은 50.0%,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에도 RIR(20%)이 36.0%로 근로빈곤가구가 임대료에 대해 많은 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태분석결과 소득과 주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근로빈곤 가구들은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들어가며

2008년말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취약계층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라 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은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절대 혹은 상대)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근로빈곤은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노동시장 유연화현상으로 인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임시·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활동이 비정기적으로 일어나

는 계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작년 말의 금융위기는 근로빈곤 계층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sup>1)</sup> 정부의 대응방안도 이들 계층의 생활안정(희망근로, 긴급복지 확대, 기초보장수급자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위기이후 지원방안은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방안이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의식주(衣食住)를 들 수 있으며, 소득이 의(衣)와 식(食)에 관련된 것이라면, 현재 정부의 지원대책에서는 주거(住

1) 황덕순·이병희(2009)의 연구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용직위주로 노동시장재편이 이루어졌다면,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는 상용직 보다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영세기업종사자 등 근로형태가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고용 및 소득의 감소)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황덕순·이병희(2009), 「일자리위기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Working Poor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소득, 노동시장 현황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와 대응방안들에 대해서는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sup>2)</sup>.

본고에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빈곤계층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계층의 주거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현재의 분석자료는 근로빈곤계층의 정확한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근로빈곤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 2. 근로빈곤 개념 및 분석틀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라 할 수 있다. 동시기는 역시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기관과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근

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sup>3)</sup>. 근로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노대명 외(2007)의 경우 근로빈곤층을 세 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들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통칭한 “취업빈곤층(working poor)”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근로빈곤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을 취업빈곤층에 포함한 경제활동 빈곤층(active poor), 셋째, 경제활동빈곤층에서 6개월의 근로 및 구직기간을 초과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근로빈곤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형태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개념이 가장 근로빈곤층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홍경준(2005)의 연구에서는 ①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빈곤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중 지난 1주간 주요활동에 대해 ‘연로’나 ‘퇴직’으로 응답한 사람들 중 65세 이상인 사람과 ‘심신장애’로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② 6개월 간 경제활동 빈곤층(빈곤가구의 근로능력을 가진 가구원 중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 ③ 취업빈곤층(빈곤가

2) 근로빈곤가구들에 대한 주거관련 연구로는 최근에 연구가 진행된 김경휘와 김선미·최옥금의 연구를 들 수 있음(김경휘(2009), 「근로빈곤가구의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vol 40, no3; 김선미·최옥금(2009), 「근로빈곤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 6, no3).

3) 근로빈곤 정의에 대한 정리는 김태완·전지현(2009)의 자료를 다시 구성한 것임(김태완·전지현(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진단: 개념과 규모추정을 중심으로」, 『Working Poor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1월호).

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으로 근로빈곤층을 살펴보고 있다. 이병희·반정호(2008)의 경우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5세 이상(중고생 제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65세 이상·재학 중·군복무 중·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있다.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빈곤의 개념을 살펴보면 EU의 경우 근로빈곤층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으로 지난 1년간 주된 경제활동상태(임금, 비임금, 실업자, 퇴직자,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OECD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들 중 취업자로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개인 소득이 절대빈곤수준과 비교하여 그 이하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지난 27주간 노동시장(구직활동, 일을 한 경우)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빈곤계층의 주거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령, 경제활동, 근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빈곤계층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거의 경우 개인단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구

단위로 구성되며, 실제 개인들에 대한 주거실태 자료를 담고 있는 만족스러운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의 한계와 주거가 가구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보다는 가구를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의 주거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여기서 근로빈곤가구를 가구의 연령이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며, 장애와 만성질환(6개월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비경제활동 상태가 아닌 가구들 중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즉 취업빈곤층(임금 및 비임금)과 실업빈곤층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노대명 외(2005) 연구의 두 번째 개념과 이병희·반정호(2008)의 근로빈곤 개념과 비슷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 3. 근로빈곤가구 주거실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절대빈곤율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였으며, 상대빈곤율은 OECD수정균등화 방법을 통해 계산된 중위 50%를 기준으로 하여 주거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중위소득 50%를 활용한 이유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과 더불어 빈곤선이 상

4) 김경휘(2009)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가구를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근로하고 있으면서,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것으로 정의함. 반면에 김선미·최옥금(2009)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 가운데 60세 이하이면서 질병과 장애가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로 하고 있음.

5) 여유진 외(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석』, 연구 05-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ld Bank(2002), A Sourcebook for Poverty Reduction Strategies-vol 1: Core Techniques and Cross-country issues.

향조정됨에 나타나는 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중위소득 50%는 최저생계비 약 120~130% 사이라 할 수 있어 동 빈곤선을 활용하였다. 또한 근로빈곤가구의 주거수준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비교대상그룹으로 동일한 근로가능계층(가구주연령 18~65세, 비장애인, 6개월 이하 만성질환을 가진 자)이면서 빈곤선 이상에 있는 비빈곤 근로가구(중위소득 50% 이상)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근로활동, 소득 및 주거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2007년 기준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sup>6)</sup>.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주를 기준(2007년)으로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절대빈곤 미만(경상소득기준)의 경우 2.4%로 나타났으며, 상대빈곤의 경우에는 중위 40%, 50%, 60%가 각각 2.9%, 5.7%와 9.4%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구주가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빈곤선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가구 내에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구원의 질병, 교육, 가구주 혹은 가구원 실업 등)가 발생시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동 자료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분석 자료가 발표될 경우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근로빈곤가구로 분류된 가구들의 일반 특성을 분석해보면 성별의 경우 주로 남성가구주가 약 76%에서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30~49세 이하의 가구주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각각 70.7%, 69.8%로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연령대에서 근로빈곤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동 연령대의 가구주로 구성된 가구는 새로이 가정을 꾸리거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가구가 빈곤에 처할 경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

표 1. 근로빈곤가구 및 일반가구 빈곤수준(2007년, 경상소득)

(단위: %)

구분	절대빈곤	상대빈곤		
		40	50	60
전체가구	9.8	14.8	20.6	26.4
근로빈곤가구	2.4	2.9	5.7	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6)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에서 함께 작성 발표되는 자료로 현재 3차 자료(2005~2007)까지 공개되어있음. 동 자료는 매년 전국의 약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 및 가구에 대해 소득·소비지출, 근로활동, 의료 및 주거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다른 패널자료들이 조사특성별(근로자, 노인, 청소년 등)로 중점 조사대상자를 다르게 조사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복지패널은 전체계층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특성별로 조합된 연구분석이 가능함.

표 2. 근로빈곤가구 일반특성(2007년)

(단위: %)

구분		근로빈곤가구	
		절대빈곤 미만	상대빈곤(중위 50% 미만)
가구주 성	남	81.0	75.9
	여	19.0	24.1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2.3	3.9
	30~39세 이하	27.9	30.7
	40~49세 이하	42.8	39.1
	50~59세 이하	10.2	12.6
	60~64세 이하	12.2	10.5
	65세 이상	4.6	3.2
가구원수	1인 가구	12.2	13.7
	2인 가구	19.4	21.4
	3인 가구	24.1	24.5
	4인 가구	31.4	29.4
	5인 가구	9.9	9.0
	6인 가구 이상	3.1	1.9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61.0	55.8
	사별	8.1	8.0
	이혼	13.7	18.5
	별거	4.6	3.8
	미혼	12.6	1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할 계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가구원수로는 3~4인가구인 경우가 각각 55.5%와 53.9%로 주로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 분석인 가구주의 결혼상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유배우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 이혼과 미혼으로 인해 근로빈곤 상태에 놓인 가구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혼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

가구주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경우 충분한 근로능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빈곤에 직면하게 되는 계층으로 볼 수 있다.

근로빈곤가구들의 주거실태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거형태에 있어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빈곤선에 의한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세부적으로 지역에 대한 분석과 근로빈곤가구와 비빈곤

근로가구간의 점유형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근로 빈곤가구들의 경우 대부분이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비빈곤 근로가구는 일반아파트가 52.1%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도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빈곤가구는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빈곤가구는 일반단독주택에의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점유형태별로 근로빈곤가구와 비빈곤 근로가구를 분석해 보면, 두 계층 모두 자가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위 50% 미만에서는 자가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차가구라 할 수 있는 전세와 월세의 비중에서도 절대빈곤 미만과 비빈곤 근로가구의 경우 40~42% 사이인 반면에 상대빈곤가구의 경우에는

**표 3. 근로빈곤가구 지역별 주거형태**

(단위: %)

구 분	절대빈곤 미만			상대빈곤(중위 50% 미만)			비빈곤 근로가구 (중위 50% 이상)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일반단독주택	20.1	15.3	55.9	20.1	15.7	63.8	8.6
다가구용 단독주택	35.0	39.8	-	30.6	33.3	2.7	20.5
다세대주택	11.3	12.8	-	13.0	14.3	-	8.6
연립주택(빌라)	4.4	3.7	9.4	3.1	2.9	5.3	5.9
일반아파트	25.1	23.9	34.7	28.4	28.9	23.1	52.1
영구임대아파트	0.4	0.5	-	1.2	1.4	-	0.7
기타 <sup>1)</sup>	3.7	4.0	-	3.6	3.5	5.1	3.6

주: 1) 기타에는 오피스텔, 비닐하우스·움막 등,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비거주용 건물 거주(상가, 공장 등), 임시가건물 등이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표 4. 근로빈곤가구 지역별 점유형태**

(단위: %)

구 분	절대빈곤 미만			상대빈곤(중위 50% 미만)			비빈곤 근로가구 (중위 50% 이상)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자가	49.6	44.7	85.4	44.7	42.3	69.4	51.9
전세	20.2	22.9	-	22.0	23.6	6.2	22.6
월세	22.5	24.3	9.4	24.6	25.5	15.4	18.4
기타	7.7	8.1	5.2	8.7	8.6	9.0	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46.6%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경우 자가 비중이 높은 반면에 도시지역은 전세와 월세의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빈곤가구들의 경우 임차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가구들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를 임차에서 자가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빈곤가구들의 주거와 관련한 부채수준을 보면 근로빈곤가구(절대빈곤)의 평균부채규모는 2,206만원으로 비빈곤 근로가구의 1,609만원에 비해서는 약 8백여 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빈곤가구의 부채는 1,405만원, 비빈곤 근로가구는 1,637만원으로 오히려 근로빈곤가구의 부채가 낮게 분석되고 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주거로 인한 부채가 많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과도한 부채는 근로빈곤가구들이 금융채무불이행에 처하거나 금융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자금(주택보증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필요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sup>7)</sup>. 지역별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주거관련 부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8)</sup>.

표 5. 근로빈곤가구 주거관련 부채

(단위: 만원)

구분	절대빈곤 미만	중위 50% 미만
근로빈곤	2,206	1,405
도시	2,144	1,373
농어촌	2,643	1,758
비빈곤 근로가구 (중위 50% 이상)	1,609	1,637

주: 절대빈곤 이상과 중위소득 50% 이상의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RIR<sup>9)</sup>을 활용하여 근로빈곤가구의 임대료 부담수준을 비빈곤 근로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앞의 다른 분석결과와 달리 RIR을 통한 분석에서는 근로빈곤가구들의 주거빈곤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먼저 비빈곤 근로가구의 RIR 30%가 3.9%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근로빈곤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절대빈곤 미만의 근로빈곤가구들의 RIR 30%는 37.1%에 이르고 있어 근로빈곤가구들이 임대료에 대해 많은 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에도 RIR 30%가 19.4%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함에 따라 다른 지출비용이 줄어들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근

7) 현재 정부는 이들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Microcredit)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나, 동제도가 창업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 소액금액을 지원받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8) 부채와 관련하여 부채 연체 경험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의 가구는 연체를 경험한 사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혹은 4회 이상의 연체를 경험한 가구들도 있었지만 표본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 통계적 의미를 확보할 수 없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함.

9) RIR(Rent-to-Income Ratio)은 매월 부담 가능한 임대료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득에서 월임대료의 비율을 계산하게 됨. 일반적으로 RIR이 20~30% 이상인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가구라 할 수 있음(이태진 외(2004),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Newman, S. J., & Struyk R. J.(1983), "Housing and Pover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Vol 65, no 2.).

로빈곤가구들의 생활안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긴급한 지출이 필요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도 근로빈곤가구들이 주거로 인한 위기가구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들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점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임대료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소득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욱 낮은 상태라는 점에서 임대료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RIR이 소득을 통한 주거빈곤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최저주거기준<sup>10)</sup>은 주택관련 실물자산을 통해 주거빈곤을 측정하게 된다. 패널조사에 나타난 근로빈곤가구들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정도를 살펴보면, 방수 및 면적기준에서

비빈곤 근로가구에 비해 면적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있는 경우가 절대빈곤의 경우 4.1배, 상대빈곤의 경우는 2.8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방수의 경우에는 가구유형 혹은 가구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가구에 비해 비빈곤 근로가구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중 하나인 시설기준에서도 역시 근로빈곤가구들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가지(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미달한 경우도 절대빈곤 미만은 7.0%, 중위소득 50% 미만은 4.0%로 비빈곤 근로가구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과 같이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비빈곤 근로가구에 비해 주거형태, 주택관련 부채, 소득대비 임대료부담수준(RIR)과 최저주거기준

표 6. RIR을 이용한 근로빈곤의 임대료 과부담비율(임차가구)

(단위: %)

구분	RIR 30%×절대빈곤 미만	RIR 30%×중위 50% 미만	비빈곤 근로가구(중위 50% 이상)
근로빈곤	37.1	19.4	3.9
도시	36.1	18.4	
농어촌	64.4	43.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10)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이미 2000년 10월 건설교통부에서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한 적이 있으나 이는 법적사항이 아닌 임의기준에 불과하였음. 이후 이를 보완하여 2004년 주택법 5조의2 및 시행령 7조에 의해 2004년 6월 건설교통부가 새롭게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음. 김혜승(2007)의 연구에 의하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추정한 결과 약 206만 가구, 일반가구 대비 13.0%수준인 것으로 추정됨(국토연구원(20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혜승(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 국토연 2007-8, 국토연구원).

11) 패널조사를 통해 살펴본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은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아파트, 전세용자 및 자가 구입자금 지원, 저소득층 원세지원 등을 의미함.



표 7. 근로빈곤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구 분		절대빈곤 미만			상대빈곤(중위 50% 미만)			비빈곤 근로가구 (중위 50% 이상)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방수 및 면적기준	방수	55.0	54.3	60.4	54.0	53.5	59.4	63.3
	면적기준	11.5	12.7	2.4	7.3	7.5	4.9	2.8
	방수&면적	9.9	10.9	2.4	6.6	6.8	4.9	2.7
시설 기준	부엌	7.0	7.7	2.3	4.0	3.5	9.0	0.7
	화장실	10.0	9.9	10.1	7.7	6.0	25.1	1.8
	목욕시설	11.3	11.7	8.4	10.6	9.7	19.6	1.4
	부엌&화장실&목욕시설	7.0	7.7	2.3	4.0	3.5	9.0	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에 있어 다소 열악한 주거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외에 추가분석으로 근로빈곤가구들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수혜여부<sup>11)</sup>, 거의 대부분의 근로빈곤가구들이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을 받아본 경험이 미미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구체적 결과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가구들이 정부정책의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은 정부 주거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4. 나가며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가구들의 주거실태에 살펴보았다. 그러나 분석과정에 있어 본 분석의 한계라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근로빈곤

가구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점에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과 주거상황이 함께 연계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과 주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빈곤가구들의 주거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과는 물론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분석결과 근로빈곤가구들의 경우 소득이 빈곤한 상태에서도 주거비(혹은 임대료) 부담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차가구들이 경험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 정부의 주거지원정책 수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지만, 기초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많은 근로빈곤가구들이 이들 지원방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전월세 지원,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자

격은 물론 은행의 신용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 근로빈곤가구들은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하여 이를 통과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가구들이 비정기적인 고용상태에서도 소액수준이라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최저주거기준에서 미달하는 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원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주택은 소득과 함께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

고 필수적인 생활요소라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확보되어야 만 본인은 물론 가구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장기적인 탈빈곤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여건이 조성될 때 근로빈곤가구들에 대한 주거지원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경복**